

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

▣ 라자드코리아 SRI 증권투자회사(주식) 투자설명서 변경 전·후 비교표

항목	정정사유	변경전	변경후
투자경정시 유의사항 안내	법 개정사항 반영	1.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1.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,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정보 업데이트	(신설)	2013.09.11 감독이사 변경 및 법 개정사항 반영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. 운용전문인력	정보 업데이트	전기 정보	당기 정보로 업데이트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전기 정보	당기 정보로 업데이트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과세 변경안 적용	(3) 주주에 대한 과세율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회사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.4% (소득세 14%, 주민세 1.4%)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.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(이자소득과 배당소득)이 4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, 연간 금융소득(이자소득과 배당소득)이 4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(최고한도 소득세율 35%, 주민세 3.5%)로 종합과세 됩니다.	(3) 주주에 대한 과세율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회사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.4% (소득세 14%, 주민세 1.4%)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.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(이자소득과 배당소득)이 <u>2 천만원</u>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, 연간 금융소득(이자소득과 배당소득)이 <u>2 천만원</u>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<u>2 천만원</u> 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(최고한도 소득세율 35%, 주민세 3.5%)로 종합과세 됩니다.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5. 발기인·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나. 감독이사에 관한 사항	감독이사 변경	황규진 삭제	김광휘 추가

항목	정정사유	변경전	변경후
<p>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p> <p>1. 재무정보</p>	법 개정사항 반영	<p>투자회사의 재무제표는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중 집합투자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, 회계감사 적용 면제 펀드(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50 억 이하인 경우)로 감사의견 해당사항 없습니다.</p>	<p>투자회사의 재무제표는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중 집합투자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, 회계감사 적용 면제 펀드(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<u>300 억 이하인 경우</u>)로 감사의견 해당사항 없습니다.</p>
<p>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p> <p>4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</p>	정보 업데이트	전기 정보	당기 정보로 업데이트
<p>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p> <p>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</p> <p>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내용</p> <p>라. 운용자산 규모</p>	정보 업데이트	전기 정보	당기 정보로 업데이트
<p>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p> <p>6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</p> <p>가. 회사의 개요</p>	정보 업데이트	전기 정보	당기 정보로 업데이트
<p>제 5 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p> <p>1. 주주의 권리에 관한 사항</p> <p>가. 주주총회등</p>	법 개정사항 반영	<p>2) 주주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</p> <p>생략</p> <p>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주주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주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</p>	<p>2) 주주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</p> <p>생략</p> <p>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주주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주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권의 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</p>

항목	정정사유	변경전	변경후
		<p>(4) 반대매수청구권</p> <p>주주총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당해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주주는 주주총회의 의결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주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</p> <p>이때, 집합투자업자는 매수</p>	<p>(이하 항에서 “ 간주의결권 행사 ” 라 한다)한 것으로 봅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주주에게 법 시행령 제 221 조제 6 항에 따라 집합 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, 전화·전신·팩스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.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3.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 총수가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4. 그 밖에 주주의 이익 보호와 주주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 <p>(4) 반대매수청구권</p> <p>주주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 투자업자에게 주식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 제 188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정관의 변경 또는 제 193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회사의

항목	정정사유	변경전	변경후
		<p>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그 주권을 매수합니다.</p> <p>다만, 매수자금의 부족으로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주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으며, 주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을 주주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.</p>	<p>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반대(주주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)는 주주가 그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</p> <p>2. 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회사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집합투자업자가 시행령제 225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 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</p> <p>이때, 집합투자업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그 주권을 매수합니다.</p> <p>다만, 매수자금의 부족으로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주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으며, 주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을 주주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.</p>
<p>제 5 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p> <p>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</p>	<p>법 개정사항 반영</p>	<p>가. 정기보고서</p> <p>(1)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</p> <p>① 영업보고서 생략</p>	<p>가. 정기보고서</p> <p>(1)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</p> <p>① 영업보고서 생략</p>

항목	정정사유	변경전	변경후
		<p>3)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</p> <p>나. 수시공시</p> <p>(2) 수시공시</p> <p>1. 운용전문인력의 변경</p> <p>(3)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</p> <p>- 합병, 영업의 양도·양수, 임원의 임면,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: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</p> <p>-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: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</p> <p>-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법령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</p>	<p>3)법제 87 조제 8 항제 1 호·제 2 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</p> <p>나. 수시공시</p> <p>(2) 수시공시</p> <p>1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(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,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.)</p> <p>(3)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</p> <p>- 법 제 87 조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주요 의결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는 경우: <u>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</u></p> <p>-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: <u>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</u></p> <p>-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법령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로부터 <u>5 일이내</u>에 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</p>